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이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 ◆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관리하여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체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 활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 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경영정보 등록 법적근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 제6조의3(이의신청),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신청장소

- ◆ (농업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
- ◆ (농업법인) 법인 주사무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

## 신청방법

- ◆ (신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복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안됨

- ◆ (변경)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agrix.go.kr](http://www.agrix.go.kr)), 1644-8778(콜센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변경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위임장, 경영주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법인) 등

## ◆ 신청시기

- (농작물) ① 종자(묘) 파종 또는 정식, 삼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  
② 과수, 조경수 등 계속 재배중인 경우 전지·전정 등 관리시기
- (가축) ① 허가 또는 등록대상 가축은 허가, 등록 이후  
② 허가 또는 등록대상 제외 가축은 가축의 입식, 사료 급여 시작 이후

## ◆ 처리기간: 30일

#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경영체 → 농관원)

접수 및 서류검토(서류검토 및 보완)

시스템 확인(주민, 토지, 건강보험 등)

현지조사 확인(농지, 품목, 축종 등)

전산등록 및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 농업인 49개 등록정보(농업법인: 농업인 등록정보 + 10개 항목)

분야	항목수	내용
일반현황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주 성명, 주소, 영농 이력,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공동경영주 여부 등</li> <li>· 농업법인명, 대표자 성명, 구성원, 출자규모 등</li> </ul>
농지 및 농작물 재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li> </ul>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사육품목, 사육규모 등</li> </ul>
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 (농업법인만 해당)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등</li> <li>· 가공대상 품목 및 품목별 판매량 등</li> </ul>
소득·자산·부채 (농업법인만 해당)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자산, 부채 등</li> </ul>
연계정보 (농정원 등 등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보조·융자금, 친환경 인증,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li> </ul>
합 계	59	

# 농업경영체 등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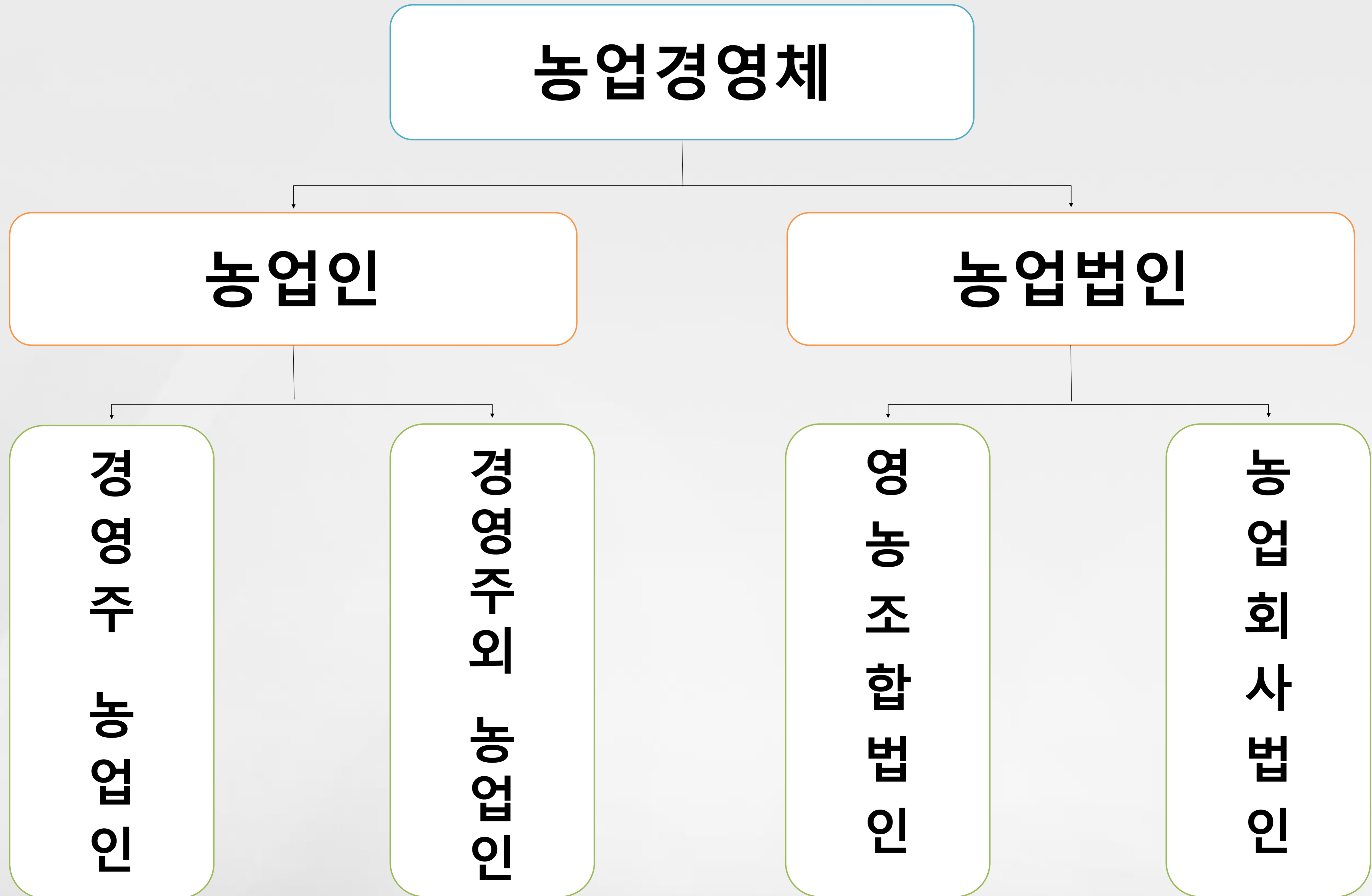
구 분	2023년			2024년		
	합계	농업인	법인	합계	농업인	법인
<b>합계</b>	<b>1,840,132</b>	<b>1,822,488</b>	<b>17,644</b>	<b>1,841,411</b>	<b>1,823,403</b>	<b>18,008</b>
서울특별시	24,265	24,152	113	24,627	24,508	119
부산광역시	21,652	21,530	122	21,232	21,118	114
대구광역시	44,772	44,603	169	44,822	44,640	182
인천광역시	25,566	25,409	157	25,728	25,553	175
광주광역시	30,551	30,357	194	30,906	30,718	188
대전광역시	23,724	23,605	119	23,622	23,506	116
울산광역시	27,388	27,279	109	27,352	27,242	110
경기도	227,761	225,672	2,089	228,431	226,242	2,189
강원특별자치도	111,663	110,709	954	111,784	110,806	978
충청북도	118,332	117,186	1,146	118,524	117,392	1,132
충청남도	203,319	201,301	2,018	202,760	200,687	2,073
전북특별자치도	168,355	165,772	2,583	168,809	166,152	2,657
전라남도	249,240	245,910	3,330	248,511	245,125	3,386
경상북도	278,762	276,775	1,987	279,688	277,654	2,034
경상남도	215,932	214,328	1,604	215,599	213,988	1,611
<b>제주특별자치도</b>	<b>55,480</b>	<b>54,638</b>	<b>842</b>	<b>55,552</b>	<b>54,725</b>	<b>827</b>
세종특별자치시	13,370	13,262	108	13,464	13,347	117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현황



구 분	관련기관	주요내역
세금 감면	행정안전부(지방세)	· 농지 취·등록세 감면, 법인면허세 면제
	국세청(국세)	· 법인세 감면,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인의 농지 등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감면
국고 보조·융자금 지원대상	농식품부	· 전체 국고 보조·융자사업 지원대상 (공익직불 등 농업경영체 대상사업의 기본요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농업인 감면 적용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적용
	한국장학재단	·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 농업인 수당 지원 · (충청북도) 벗짚 환원사업 지원 ·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전라남도) 양봉관련 자재 지원 · (경기도) 예비청년 창업농 육성지원
지원규모 선정 기준	농식품부 중앙부처 등	· 농업용 면세유 배정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인력지원	농식품부	· 영농도우미 지원
	고용노동부	· 외국인 고용 쿼터배정 기준
양육서비스	보건복지부	· 맞벌이부부 영·육아 양육지원(보육료 감면)
농업인 자격 확인	농·축협	· 농·축협 조합원 가입
	농어촌공사 등 농업분야 기관	· 농·축산업 경력직 사원 채용 시 증빙 · 한국농수산대학교 입학 · 농협 장학관(농업대학생 숙소) 입사
	지자체·농협 각종 농업인 협회	· 전국 직거래장터 참여 · (제주도)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교육 · (서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 (춘천, 홍천) 농업인 대학 교육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사항

- ◆ (신청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 ◆ (신청시기)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 (독립경영) 농업경영체별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독립경영 확인
  - 경계 설치
    - 농지(노지): 독, 방풍림, 경계석, 담 등(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지(시설)은 비닐, 유리, 경질판 등(난방을 하는 경우 이웃 시설과의 난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축·곤충사육 시설은 벽, 울타리 등
- ◆ (정당한권원)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 등 생산수단의 권리 확인
  - 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곤충 사육 시설인 경우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 타인 소유의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임대차 확인)
  - 가축·곤충 사육 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한 서류
- ◆ (등록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농작물재배)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1)

등록기준	증빙서류
가.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 (휴경·폐경 면적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농사실 확인서</li> <li>② 농지대장(임차)</li> <li>③ 농자재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120만원 이상)</li> </ul>
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농사실 확인서</li> <li>② 농지대장(임차)</li> <li>③ 농자재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농산물 판매 영수증(120만원 이상)</li> </ul>
다.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 작물 (임업용 제외) 재배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건축물대장</li> <li>② 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li> <li>③ 원료콩 구입 영수증 또는 콩나물 판매 영수증</li> </ul>
라.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 이상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건축물대장</li> <li>② 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li> <li>③ 원료콩 구입 영수증 또는 콩나물 판매 영수증</li> </ul>

◆ 재배면적은 토지대장의 공부 면적이 아닌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만 등록



- ❖ 제외면적(폐경)
  - 건축물
  - 포장 도로
  - 빌레
  - 묘지 등

# 자경 농지 증빙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영농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농작물 재배· 가족사육 정보	읍·면·동	리·통	지번	재배품목/ 사육품목	재배면적(㎡)/ 사육두수(두)	비고

상기 농업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통)장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웃주민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웃주민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통)에 인접 지역의 이(통)장 또는 이웃주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류 비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관원 지원·사무소

농지소재지 이(통)장 또는  
이웃주민 2명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가축사육)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2)

등록기준	증빙서류
<p><b>마. 330m<sup>2</sup> 이상 농지에/</b>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나 [별표 1]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1] 기준 이상의 <b>가축을 사육하는 사람</b>                      * 소, 돼지, 닭, 오리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p>	① 영농사실 확인서 ② 농지대장(임차) ③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가축입식 증명서 ④ 축산물 판매(120만원 이상) 영수증 ⑤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
<p><b>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사람 또는 등록된 사람</b>                      * 소, 돼지, 닭, 오리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p>	① 영농사실 확인서 ②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③ 사료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등 ④ 축산물 판매(120만원 이상) 영수증 ⑤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
<p><b>사.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b></p>	① 영농사실 확인서 ② 곤충 신고확인증 ③ 곤충 판매(120만원 이상) 영수증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가축사육)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3)

등록기준	증빙서류
<p><b>아.</b>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라 양봉농가 등록증 받고 꿀벌 사육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농사실 확인서</li> <li>② 양봉농가 등록증 (이동 사육하는 경우 이동 양봉 계획서)</li> <li>③ 꿀 등 판매(120만원 이상) 영수증</li> </ul>
<p><b>자.</b> 330m<sup>2</sup> 이상 초지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의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발급규정 별표3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농사실 확인서</li> <li>② 초지조성허가증</li> <li>③ 축산물 판매(120만원 이상) 영수증</li> <li>④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li> </ul>
<p><b>차.</b> 330m<sup>2</sup> 이상 농지에 50m<sup>2</sup> 초과하는 사육시설에 지렁이를 사육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영농사실 확인서</li> <li>② 농지대장(임차)</li> <li>③ 축산물 판매(120만원 이상) 영수증</li> </ul>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가축 규모)



■ [별표 1]

## 가축 사육 기준 및 사육시설 면적 기준

가축 종류		사육 기준	사육시설 면적 기준	
대(大)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착유우	1마리 이상		
중(中)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면양, 염소, 오소리, 개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小)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사육시설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	닭, 메추리, 꿩	육용	1,000마리 이상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산란용	500마리 이상	
	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가금 및 조류	20마리 이상		
기타	지렁이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사육 기준)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개의 경우 식용은 제외,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하고,

기타 가금 및 조류는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한정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곤충 규모)



■ [별표 2]

## 농업경영체 등록 곤충사육 규모기준

구분	종류	수량(마리)
천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애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동애등애류	10,000
사료용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500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곤충 종류)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곤충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구분	종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호리꽃등애
	마. 기생벌류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갱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바. 응애류	긴털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 화분 매개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 <i>Bombus</i>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 ( <i>Megachilidae</i>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짱은꽃등애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 환경 정화 곤충	아메리카동애등애,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4. 식용 곤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5. 약용 곤충	말벌과( <i>Vespidae</i> spp.), 땅강아지, 등에과( <i>Tabanidae</i> spp.), 가뢰과( <i>Meloidae</i>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 <i>Mantidae</i> spp.), 매미과( <i>Cicadidae</i> spp.), 굼벵이류( <i>Holotrichia</i> spp.), 왕지네, 그 밖에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6. 학습·애완 곤충	가. 잠자리목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나. 사마귀과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다.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라. 메뚜기류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마. 여치류	여치, 긴날개여치
	바.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사. 수서노린재류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아. 뱀잠자리과	뱀잠자리류 유충
	자. 수서딱정벌레류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차. 딱정벌레과	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카.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파. 꽃무지과	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하. 반딧불과	반딧불과 전종
	거. 거저리과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너. 하늘소류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벗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
	더. 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러. 개미류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머. 거미류	황닷거미, 벌농발거미, 먹닷거미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 사료용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애,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 그 밖의 용도 곤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경영주외 농업인-가족원)

##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가족원)

등록기준	증빙서류
<p><b>(1) 경영주인 농업인의 총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함께 등록된 사람</b>(세대 달리하는 배우자는 예외,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 동일한 사람)</p>	<p>① (1) 중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ul>
<p><b>(2) (1)의 경영주인 농업인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에 위치하고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 별지 제2호 서식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b></p>	<p>② (2) 중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li> </ul>
<p><b>(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b></p>	

# 경영주외 농업인 증빙서류

■ [별지 제2호서식]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농작물 재배· 가족사육 정보	읍·면·동	리·통	지번	재배품목/ 사육품목	재배면적(㎡)/ 사육두수(두)	비고

상기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통)장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웃주민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웃주민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가족사육시설 소재지 이(통)에 인접 지역의 이(통)장 또는 이웃주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배우자,  
도시지역 거주자

<서류 비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관원 지원·사무소

농지소재지 이(통)장 또는  
이웃주민 2명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경영주외 농업인-고용원)

##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고용원)

등록기준	증빙서류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제출한 사람	① 경영주인 농업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최근 3개월 이상)  ②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농업법인)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사항

### ◆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9620호, 2009.4.1.)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법' 제정('09.4)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은 종전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으로 간주

### ◆ (신청시기)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부대사업의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

### ◆ (독립경영) 농지 및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독립경영 확인

- **경계 설치**
  - 농지(노지): 독, 방풍림, 경계석, 담 등(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지(시설)은 비닐, 유리, 경질판 등(난방을 하는 경우 이웃 시설과의 난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축·곤충사육 시설은 벽, 울타리 등

### ◆ (정당한권원)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 등 생산수단의 권리 확인

- 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곤충 사육 시설인 경우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 **타인 소유의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임대차 확인)**
- 가축·곤충 사육 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농업법인)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사항

### ◆(등록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확인

✓ 농업법인 사업범위, 농업인 조건 확인

### ◆(사업범위) ① 농업의 경영 ②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③ 농작업의 대행 ④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⑤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 ⑥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 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농업인 조건) ①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 이상

②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1인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영농조합)



##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등록기준	기준 및 확인방법
설립근거 및 목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협업적 농업경영, 생산성(高),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li> <li>◆ (확인방법) 법인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업목적과 사업범위 확인</li> </ul>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b></li> <li>◆ (확인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li> </ul>
사업 범위 충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설립, 변경신고 확인증을 확인하여 사업범위 포함여부 확인</li> </ul>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영농조합 증빙서류)

##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구분	공통 제출서류	법인형태별 제출서류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li> <li>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③ 사업자등록증</li> <li>④ 정관</li> <li>⑤ 농업인 확인 서류(대표자 포함 5인 이상)</li> <li>⑥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li> <li>⑦ 농업법인 설립, 변경 신고확인증</li> </ul>	<p>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가공·판매·수출 등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중 1가지</p>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농업회사)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등록기준	기준 및 확인방법
설립근거 및 목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li> <li>◆ (확인방법) 법인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업목적과 사업범위 확인</li> </ul>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1인이 총출자액의 10% 이상 출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출자액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출자액은 8억원 이상 출자한 경우 가능</li> </ul> </li> <li>◆ (확인방법)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출자액 및 비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li> </ul> </li> </ul>
사업 범위 충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설립, 변경신고 확인증을 확인하여 사업범위 포함여부 확인</li> </ul>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농업회사 증빙서류)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증빙서류

구분	공통 제출서류	법인형태별 제출서류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li> <li>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③ 사업자등록증</li> <li>④ 정관</li> <li>⑤ 농업인 확인 서류(1인 이상)</li> <li>⑥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농업인·비농업인별 출자내역)</li> <li>⑦ 농업법인 설립, 변경 신고확인증</li> </ul>	<p>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가공·판매·수출 등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중 1가지</p>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토지



①

논·밭·과수원

공부상 지목  
논, 밭, 과수원

②

임야

산지전용허가

농지대장 등재

③

논·밭·과수원이  
아닌 토지

농지대장 등재  
(공부상 지목  
잡종지, 대지 등)

④

초지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초지  
(「초지법」 적용,  
초지조성허가증)

# 생산·개량 시설 등록



## 「농지법」에 따른 생산·개량 시설

- 등록 농지에 포함된 생산 시설, 개량 시설 실관리 면적으로 등록 가능
  - ✓ 실관리 면적은 포함, 농작물 재배 면적은 제외

구분	상세 내용
개량 시설	▪ 유지(웅덩이)
	▪ 양·배수시설
	▪ 수로
	▪ 농로
	▪ 제방(석축 및 옹벽은 농지개량시설 제외, 법령해석례 08-0183)
	▪ 계단·흙막이·방풍림(토양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생산 시설	▪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보관, 농기계보관, 농산물간이처리장, 휴식시설(다만, 연면적 20㎡ 이하, 주거목적이 아닐것)
	▪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
	▪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 200톤 이하)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 보관실, 작업장, 간이진열시설(33㎡ 이하) * 다만,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필요한 시설
	▪ 시설면적이 6천㎡이하에서 6천㎡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33㎡ 이하, 주거목적이 아닐 것)
▪ 간이퇴비장	

#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 불가능한 토지

- ◆ 사(私)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
- ◆ 전체 면적이 폐경인 농지
-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마친 농지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
- ◆ 하천구역 안의 농지(예외: 미 보상 농지에 대해 지자체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무단 점유 농지
- ◆ 합유 농지
- ◆ 농업법인 소유의 임차 농지

# 타인소유 농지 등록

증빙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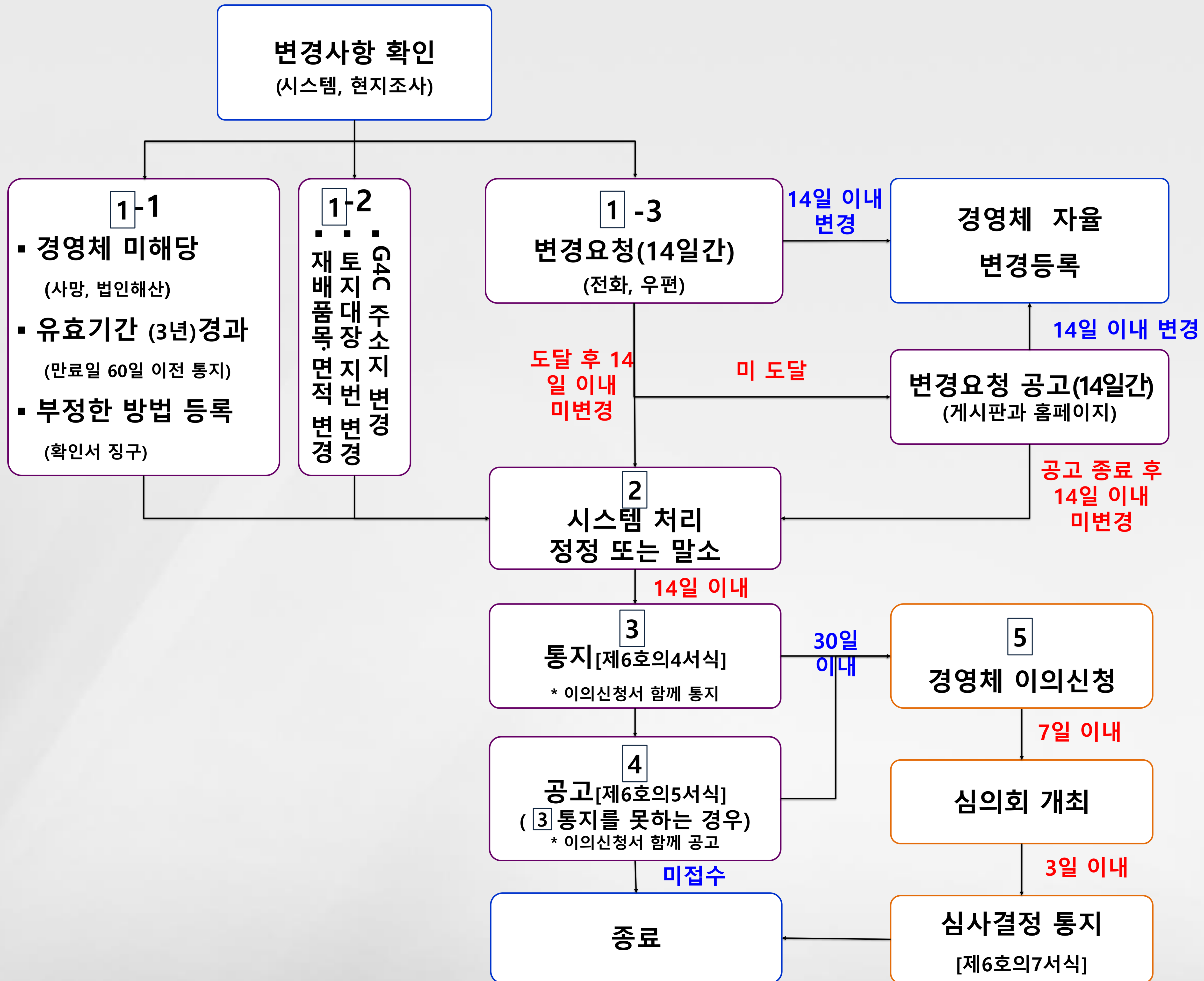
## ○ 신규, 변경 등록 시 **농지대장 일치 여부 확인**

- ① 농지대장의 임차인과 농업경영체 신청인 일치
- ②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자체에 등재 후 신청 가능

### 법 시행일('22.8.18.)이후 처벌 사항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
- 500만원이하 과태료: 농지임대차 정보를 체결·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농지임대차 정보를 체결·변경신청 하지 아니 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 직권조치 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 유효기간

### ◆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 시 등록정보 말소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신청방법

- 온라인([www.agrix.go.kr](http://www.agrix.go.kr)), 1644-8778(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 유효기간 갱신 시 '**임차농지**'는 **농지대장**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절차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행(2024.2.17.)

- ◆ 실경작 여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강화
  -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시 농업인은 30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경영체 직권 정정 및 말소 기준 확대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 거주불명, 증빙자료 제출 거부 등
- ◆ 거짓·부정 등록자 벌금형(500만원 이하) 및 재등록 제한(1년)
- ◆ 거짓·부정 확인, 증명한 자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거짓·부정등록 시 벌금형 (2024. 2. 17 시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존 과태료  
부과



500만 원 이하  
벌금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됨

## 허위등록 시 1년 간 신규 등록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여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재등록 할 수 없음

1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2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농업법인(어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 영위	법 제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31조의2 제1항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법인(어업법인)의 설립신고 또는 등기한 자	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	법 제31조의2 제2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라. 법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농업경영체별 경계 설치(독립경영)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제3항제2호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 ◆ 한 필지는 하나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  
동일 지번 농지를 2명 이상 경작하는 경우 경계 설치 필요
- ◆ 농업경영체는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경계 설치 확인(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동일 적용)
  - 농지(노지): **둑, 방풍림, 경계석, 담, 그물망 등 경계 설치**(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 독립적 물관리)
  - 농지(시설): **비닐, 유리, 경질판 등 경계설치**(난방을 하는 경우 이웃 시설과 독립적 난방)
  - 가축·곤충사육 시설: **벽, 울타리 등 경계 설치**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적정)



## 농지 경계(돌담)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적정)



## 농지 경계(방풍수)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적정)



## 농지 경계(시설) - 난방 개별관리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적정)



## 농지 경계(방풍망)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적정)



## 농지 경계(나무식재)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적정)



## 농지 경계(그물망)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적정)



## 농지 경계(그물망 & 돌담)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적정)

농지 경계(블록 & 말뚝)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부적정)



## 줄로 경계 설치



# 농업경영체별 경계 사례(부적정)



## 꽃말로 경계 설치



# 농업경영정보 정기 변경신고제



## ◆ 정기 변경신고제란?

- 중요 품목의 파종·식재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재배 품목·농지·면적 등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농업인들이 적기에 신고하는 제도

## ◆ 목적

- 정기 변경신고제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활성화

##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요청), 제6조의2(등록정보 정정·말소)

## ◆ 신고 기간 / 이행점검

- 동계작물(마늘, 양파, 감귤 등): 11~12월 / 다음년도 1~2월
- 하계작물(벼, 사과, 배, 포도 등): 4~6월 / 7~9월
- 추계작물(무, 배추 등): 9월 / 10월

※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정보 변경 시 연중 신고 가능

# 정기 변경 이행점검 결과 조치

## ◆ 대상

- 재배 품목이 다른 경우, 재배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등

## ◆ 방법

- 불일치 건은 경영체에게 등록정보 정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정정 조치

※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과 실제 재배 작물이 다르면 공익직불금 10% 감액될 수 있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